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설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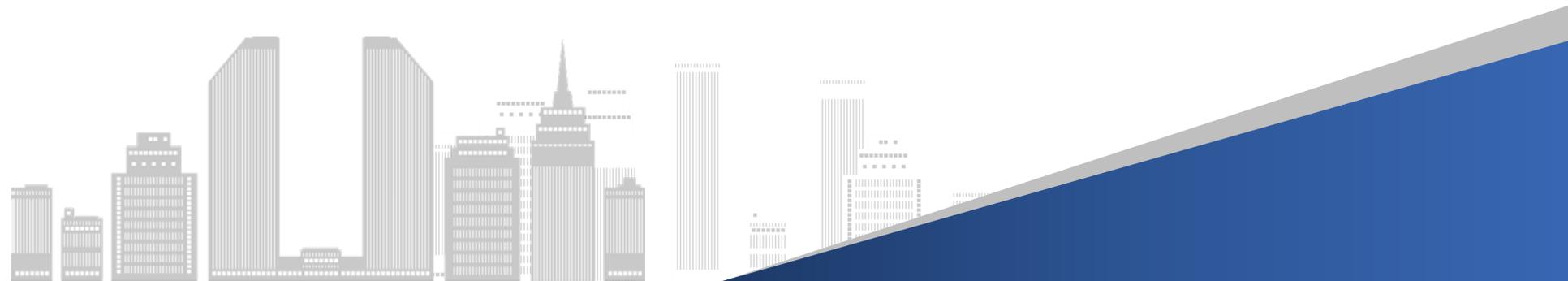
2017. 6. 14



- I. 건설업 외국인력 도입규모
- II. 건설업 외국인력 허용업종 및 인원
- III. 건설업 외국인력 신청절차
- IV. 건설업 외국인력 업무대행
- V. 외국인력 고용시 주의사항
- VI. 외국인근로자 도입관련 Q&A

I

건설업 외국인력 도입규모



외국인력 도입규모

년 도	합 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2017년(명)	56,000	42,300	6,600	2,600	2,400	100
2016년(명)	58,000	44,200	6,600	2,600	2,500	100
2015년(명)	55,400	42,400	6,000	2,300	2,300	100
2014년(명)	47,400	36,950	5,850	2,190	2,320	90
2013년(명)	46,000	37,600	4,600	2,150	1,560	90
2012년(명)	57,000	49,000	4,500	1,750	1,600	150
2011년(명)	48,000	40,000	4,500	1,750	1,600	150

외국인력 도입규모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17년 일반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5만6천명 (신규43,000+재입국13,000)으로 결정

그 중 건설업 도입규모를 2,400명으로 결정 (+ α = 탄력배분)

구분	총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총계 (명)	56,000	54,000+ α (2,000)	42,300+ α_1	6,600+ α_2	2,600+ α_3	2,400+ α_4	100+ α_5
신규	43,000	41,000+ α (2,000)	30,200+ α_1	5,870+ α_2	2,450+ α_3	2,390+ α_4	90+ α_5
재입국	13,000		12,100	730	150	10	10

신규인력 배정시기 및 규모

시기	합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합계(명)	41,000+ α (2,000)	30,200+ α_1	5,870+ α_2	2,450+ α_3	2,390+ α_4	90+ α_5
1월(1차)	10,530+ α (1,200)	6,000+ α_1	2,940+ α_2	700+ α_3	800+ α_4	90+ α_5
4월(2차)	10,320+ α (800)	6,000+ α_1	2,930+ α_2	700+ α_3	690+ α_4	
7월(3차)	10,550	9,100		550	900+ α_4	
10월	9,600	9,100		500		

II

건설업 외국인력 허용업종 및 인원



건설업 외국인력 허용업종

- 건설업은 모든 건설공사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허용되나,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제외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의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아도 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외국인고용 허용
- 건설업, 제조업 겸업하는 사업장은 주된 업종 하나로만 고용가능 (설치현장과 제작현장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인원

- 원도급 업체의 연평균 공사금액으로 고용인원 산정

- 연평균 공사금액 : 총 공사금액 $\times \frac{12}{\text{총 공사기간(월)}}$

※ 단, 잔여공사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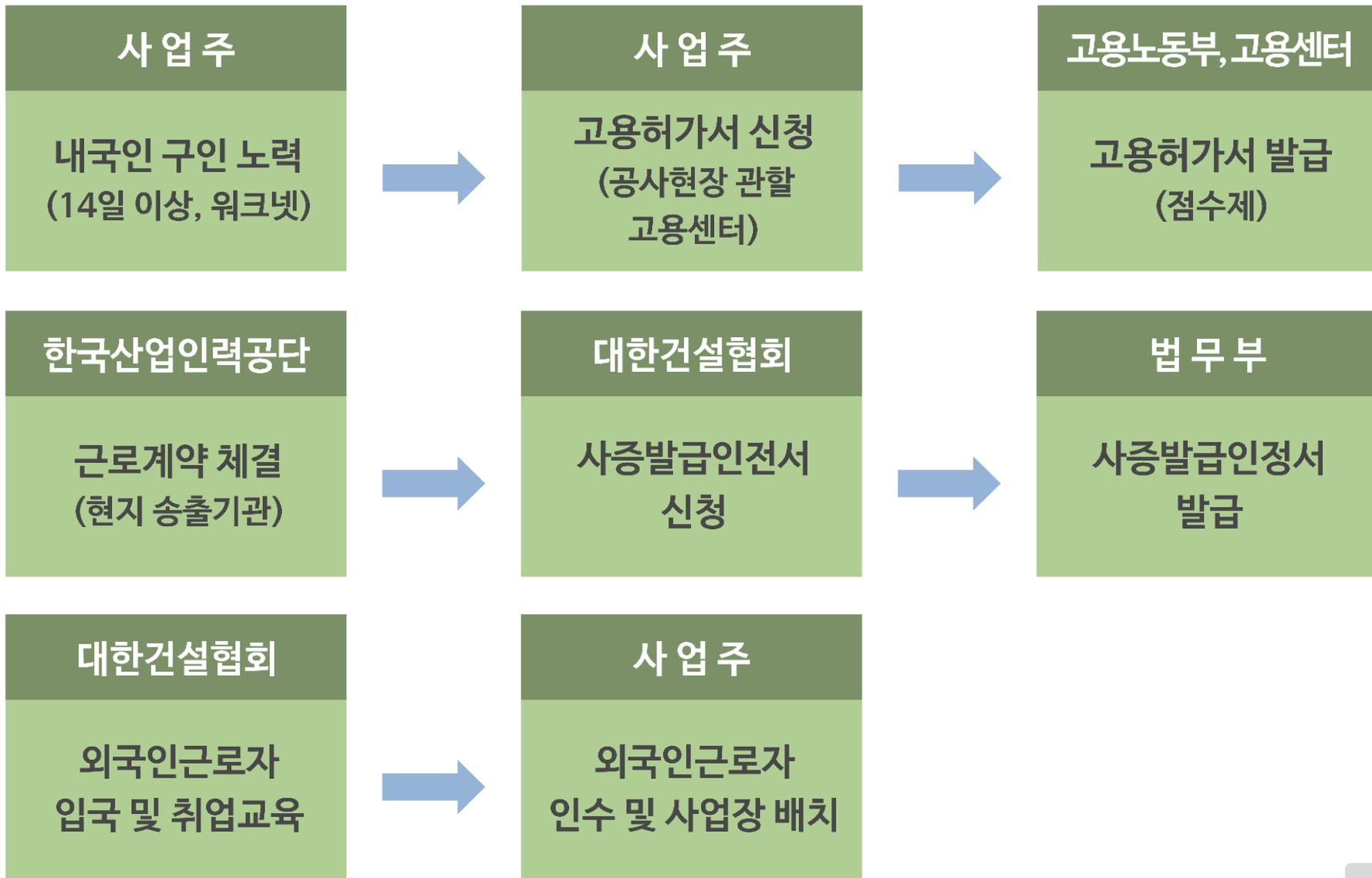
연평균 공사금액 (원도급자 총 공사금액기준)	고용 상한 인원 (신규고용계수 : 1억원당 0.3명)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X 0.4 (신규 0.3) (현장별 최대 30명)
15억원 미만	5명 (신규 3명) ※ 계수 미적용

Ⅲ

건설업 외국인력 신청절차



외국인력 채용 과정



2017년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일정

1 차

1월 5일 ~ 20일

2 차

4월 3일 ~ 17일

3 차
(예정)

7월 3일 ~ 17일 (공사현장 관할 고용센터)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전 14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 필수 (워크넷)

사업장 확정 : 7월 18일 ~ 27일

사업장 안내 : 7월 28일

고용허가서 발급 : 7월 31일 ~ 8월 2일

[신청 서류]

①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건설업등록증

④ 원도급계약서

⑤ 하도급계약서

⑥ 외국인력현황표

※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율이 기재된 원도급 계약서 혹은 공동수급협정서 첨부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 외국인력 도입 허용업종에 해당될 것
- 고용 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을 것
 - * (공사 현장기준) 내국인 구인 신청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 까지
- 임금 체불 사실이 없을 것
 - * 내국인 구인 신청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 * 근무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인 경우

외국인력 배정 방식 등

● 외국인력 배정 방식

- 점수제 배정 (100점 만점)
- 가점사항
- 외국인근로자 고용인원, 재고용 만료자가 다수일 경우, SOC사업장일 경우 등

● 건설업 특화국가 & 유효구직자

- 건설업 특화국가 :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 유효구직자 수 :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현지 국가별 한국어시험 일정 및 결과에 따라 유동적으로 구직자명부에 등재

※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일정 및 결과 확인 가능 (<http://eps.hrdkorea.or.kr>)

IV

건설업 외국인력 업무대행



대행업무 내용 및 비용

대행업무		대행 세부업무	1인당 수수료		비고
필수	근로자 도입위탁	- 근로계약 체결 및 출입국 지원	60,000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취업교육	- 외국인 취업교육(건설업)	224,000원		
선택 (신규입국자 고용시)	각종 신청대행	- 내국인 구인신청,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이하 수령 포함)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31,000원 (입국 전)	61,000원	대한건설협회
		- 고용변동신고 -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 외국인근로자업무상재해사산재·사망신고등 - 각종 정보 제공	30,000원 (입국 후, 3년)		
	편의제공	- 통역지원 및 사용자의 고충상담 - 전용보험등 가입 및 보험금 등 신청 지원 - 외국인근로자의업무외질병및상해 수습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등	72,000원 (3년)		
총 비용 ('17.7.1일부터 적용)			417,000원		

사후관리 지원

- 최초 외국인력 도입 시 현장배치 통역 지원
- 현장 안전교육, 고충상담 통역 지원
- 전화통역, 번역 서비스 지원
- 외국인근로자 노무관리, 체류관리 상담 지원
- 취업교육 시 외국인등록신청서, 채용등록 신상정보서 작성
-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에서 취업교육비 환급 신청 대행
(224,000원 중 1인당 10만원~15만원 내)

V

외국인력 고용 시 주의사항



외국인력 고용 시 주의사항

- 합법적 외국인력 고용 : 불법체류자 고용 단속 및 처벌 강화
 - 건설업 불법고용에 대해서 근로감독 강화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 실시 예상
 - 고용주 처벌 위주의 단속으로 불법취업기회를 원칙적으로 차단,
 - 불법체류자 고용 사업주는 적발 시 시정지시 절차 없이 1~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외국인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 동일 적용

VI

외국인근로자 도입관련 Q&A



외국인근로자 (E-9) 고용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건설현장 한국인 근로자 인력부족 대체
-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노무비의 상대적 절감 효과
- 중국동포 (H-2 방문취업) 근로자들은 도심지 근로를 희망하여, 산간·오지 현장에는 여전히 인력부족.
 - E-9 외국인근로자들은 계약기간 동안 상기 현장에서 연속성 있는 근로 가능

Q & A

외국인근로자들의 한국어 능력 및 기능도는 어떠한가요?

- **한국어 능력** : 현지 한국어 시험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하여 합격한 인원이 구직자 명부에 등재되므로, 기본적으로 한글을 읽을 수 있고, 간단한 대화가 가능
- **기능도** : 한국어 시험 합격 후 기능평가(건설기초기능테스트)가 이루어지고 그 정보가 알선자 명부에 기재되므로 알선자 명부를 통하여 기능도 확인 가능
- **재입국 근로자들은 한국어 능력 및 건설 기능도가 우수함**

현장이 종료되면 외국인근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현장간 이동** : 현장 공사가 종료되면 근로자들은 동일한 사업주 내 타현장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현장 간 이동은 외국인근로자가 이동하여, 근무할 현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외국인근로자들이 근로했던 공정이 끝난 경우 책임업체의 공정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타현장으로 이동이 가능

Q & A

기초안전보건교육 받아야 하는지?

- 외국인근로자는 상용직근로자이므로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 입국 시 실시하는 2박 3일, 16시간 교육 중 4H의 건설안전보건 교육이 포함. 동 교육 수료확인으로 신입직원 안전교육을 대체 가능

근로개시전 고용센터 신고의무?

- 특례고용확인을 받은 후 고용한 H-2 근로자들은 근로 시작 전 고용센터에 근로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나, E-9 외국인근로자들은 별도의 근로개시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제도 가입?

- 외국인근로자는 상용직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시 회사가 가입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 외국인근로자 퇴직금은 삼성화재 출국만기보험제도를 통하여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취업기간 만료 후 재입국제도?

- 외국인근로자가 재고용된 후 4년 10개월 취업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한 경우 현지에서 특별한국어시험을 통하여 원사업장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시 사회보험 적용?

- 필수가입 : 건강보험, 산재보험
- 임의가입 : 고용보험
- 국가상호주의 : 국민연금
 - 국민연금 적용 국가 : 태국, 스리랑카
 - 국민연금 미적용 국가 :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외국인근로자 도입 기간?

- 고용허가서 발급 후 2~3개월 이내 입국 가능
 - 고용허가서 발급 후 현지 근로자와 계약체결 기간 : 2주 이내
 - 사증발급인정신청 ~ 사증발급 : 2주 이내
 - 사증발급 후 현지 사전교육, 비자발급, 입국 준비기간 : 4주
- ※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건설협회는 외국인근로자 도입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